

# 국회의 문턱을 넘고자 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묻는다

노동권 침해 악법, 손배가압류 개선방안을 질의하며

일시 : 2020년 3월 25일(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 앞

주최 :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국가·기업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현장

▶ 문의 : 윤지선(손잡고 활동가) 010-7244-5116 / [sonjabgo47@gmail.com](mailto:sonjabgo47@gmail.com)



## \* 기자회견 배경

1. 손잡고는 2014년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무력화시키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손배가압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민들의 모금운동(노란봉투캠페인)과 입법청원에 힘입어 19대 국회와 20대 국회동안 법개정운동을 추진해왔습니다.
2. 국민의 열망과 노동권을 가로막힌 채 탄압받는 노동자들의 호소로 국회의 문턱을 넘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7년 1월 7일 국회에 발의된 이래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기본권을 행사한 국민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괴롭힘 소송을 금지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괴롭힘소송금지법안’(민사특례법) 또한 2018년 10월 발의 후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20대국회 임기와 함께 폐기될 공산이 큼니다.
3. 19대 국회 법안 발의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법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을 알린 바 있습니다.<sup>1)</sup> 20대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 후 노동현장들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소속 간사들을 면담해, 노동자들의 절실함에 공감하며, 손배가압류가 노동자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청구되고 있음을 상호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2대에 걸쳐 논의조차 해보지 않고 폐기수순을 밟게 된 현실을 쉬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4. 21대 총선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각 정당의 노동과 관련한 공약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에 손잡고는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현장들과 함께 직접 각 정당에 질의서를 보내어 노동권을 가로막는 손배가압류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

1) [한겨레 기획기사. 윤형중, 2014.9.19.] 의원 과반수가 “손배가압류 관련법 문제 있어”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55971.html>

## \* 기자회견 순서

국회의 문턱을 넘고자 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묻는다

- 노동권 침해 악법, 손배가압류 개선방안을 질의하며 -

○ 진행 -. 사회 : 윤지선 활동가(손잡고)

1) 발언 :

- . 여는 발언 : 배춘환 (손잡고 대표)
- . 노동자 인권 외면하는 국회 : 박래군(인권중심사람 소장/손잡고 운영위원)
- . 손배가압류관련 계류된 법안들의 중요성 : 송영섭(변호사, 민주노총법률원)

2) 노동현장 증언 :

- . 국가폭력의 수단 손배가압류 :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 .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 :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
- . 노조파괴 시나리오 마지막 단계 손배가압류 : 홍종인 (민주노총 충남본부 사무처장/유성 기업아산지회)
- . 불법파견 원청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 : 차현호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
- .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 : 정찬무 (공공운수노조 조직실)

3) 기자회견문 낭독 : 이원석 (기아차비정규직지회)

\* 질의서 전달 : 코로나19로 직접 전달하는 대신, 우편, 이메일, 팩스를 통해 각 정당 사무처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 . 질의서 답변 회신 기한 : 3월 25일(수)~3월 31일(화)
- . 질의서 회신 후, 보도자료 통해 공개 예정
- . 향후 계획 : 총선 이후 손배가압류 현황 및 재판경과 발표 / 입법공청회 및 국회토론회 / 청원운동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 첨부자료

o. 기자회견문 (3쪽)

o. 첨부자료 1: 노동자 손배가압류에 대한 각 정당 정책 및 입장확인 질의서(4쪽)

o. 첨부자료 2: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괴롭힘소송 금지법(민사소송 특례법) 각 법안 발의 후 경과(9쪽)

## <기자회견문>

# 국회의 문턱을 넘고자 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묻는다

## - 노동권 침해 악법, 손배가압류 개선방안을 질의하며 -

우리는 헌법에 노동3권을 보장하는 나라의 국민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노동3권을 훼손하는 악법 중의 악법인 손배가압류로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이다. 우리는 국가마저 국가폭력의 수단으로 손배가압류를 악용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을 목격했다. 우리는 2003년 배달호 열사의 죽음을 비롯해 수많은 희생을 통해 국가와 기업이 권리를 행사한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손배가압류’를 남용한 사실을 목격한 증인이다. 우리는 국제사회로부터 ‘국가가 나서 손배가압류를 자제하라’는 부끄러운 권고를 받고도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와 국회의 무능력함을 지켜봐야 했다.

20대 국회 동안에도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의 희생이 이어졌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위축시키는 것을 넘어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에 국회도 책임이 있다. ‘4만7천원’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국민이 스스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자 할 때, 국회는 무엇을 했는가. 입법의 불씨를 담은 노란봉투법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2017년 1월, 발의된 이후 3년이 넘어서도록 단 한 차례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국회임기의 절반이 훌쩍 넘는 기간동안 발의된 법안을 논의조차 못한 것을 쉬이 납득하기 어렵다. 국가가 기본권을 행사한 국민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을 막는 ‘괴롭히기소송금지법’(민사소송 특례법안)도 2018년 10월 발의되었지만, 논의되지 않았다. 두 법안 모두 20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 끝내 폐기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소명조차 들을 수 없을 것이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도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스스로 뒤집어썼다. 기가 막히게도 20대 국회의원들 스스로 ‘식물국회’라고 자평하기도 한다.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절망일 수밖에 없다. 정당과 정치인들은 20대 국회를 ‘선거로 심판해달라’고 국민 앞에 요구하기 전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반성하고, 무엇을 바로잡고자 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특히 20대 국회 원내정당은 반성없이 ‘심판’을 입에 담고, ‘표’를 달라할 자격이 있는가 자문하길 바란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1대 총선을 앞두고도 우리는 손배가압류로 노동권을 침해당하는 현실을 바꾸려는 방안을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는 더는 절망하지 않기 위해 각 정당에 직접 질의를 하고자 한다.

국회의 문턱을 넘고자 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묻는다. 지금 귀 정당은, 귀 정치인은 국민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가. 국민의 다수인 노동자에게 최소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는가. 헌법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법 노동자 손배가압류를 21대 국회에서도 그대로 두고만 볼 것인가. 21대 국회 입성을 바라는 각 정당은 제대로 답변하라.

2020년 3월 25일

손잡고, 노동권을 침해당한 손배가압류 노동자 일동

**\* 첨부자료1. 질의서**

**[노동자 손해배상 및 가압류에 대한 각 정당 정책 및 입장확인 질의서]**

\* 총 14개 문항입니다. 설문의 편의를 위해 객관식 문항으로 질문과 답변을 만들었습니다. 객관식 문항에 해당되지 않는 답변이 있거나 덧붙일 구체적인 의견이 있으시다면 추가 기재해주시면 질의결과보고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파업 등 쟁의행위를 대상으로 기업의 경영진이 민사상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를 하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 1) 불법 쟁의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응당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2) 불법 쟁의행위는 잘못됐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과도한 수준이다.
- 3) 현행 법체계가 쟁의행위의 목적, 수단, 절차, 양태 등을 지나치게 엄격히 판단해 불법 쟁의행위를 양산하고 있다.
- 4) 쟁의권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권이므로 쟁의행위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 5) 기타( )
- 6) 잘 모르겠다.

**2. 노동계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동계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 3) 기타( )
- 4) 잘 모르겠다.

**3. 20대 국회에서 노동3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률안이 제출된 적이 있습니다. 위 내용의 법률안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 1)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입법안이다.
- 2)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입법안이다.
- 3) 기타( )
- 4) 잘 모르겠다.

4. 대법원은 정리해고를 고도의 경영상의 결단으로 판단해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자동으로 불법화되어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귀 후보께서는 정리해고의 실시 여부가 쟁의행위 대상(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 3) 각 정리해고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
- 4) 기타( )
- 5) 모르겠다

5. 쟁의행위의 목적, 절차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뤄지더라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발생 경위와 정도 등에 따라 전체 쟁의행위가 불법화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파업 현장에서는 용역업체 등이 물리적 충돌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1) 폭력 등을 동원한 쟁의행위를 용인하지 않는 현 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 2) 물리적 충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지라도 쟁의행위 전체를 불법화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하면 안 된다.
- 3) 기타( )
- 4) 잘 모르겠다.

6. 평화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의 영업손실을 배상 청구하는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 1) 강제근로 금지 원칙 상 노무제공 거부를 이유로 기업의 영업손실 배상을 인정해서는 안된다.
- 2) 단체행동권의 보장하는 취지를 고려해 손해배상을 일부 제한되어야 한다.
- 3) 평화적인 쟁의행위라도 적법하지 않다면 영업손실 전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 4) 기타( )
- 5) 잘 모르겠다.

6-1.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과정에서 구호나 피켓, 소식지 등을 이유로 '회사(법인)'가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보십니까?

- 1) 회사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과도하다
- 2) 회사의 정신적 손해도 인정되어야 한다
- 3) 기타( )
- 4) 잘 모르겠다

7. 대법원에서 원칙적으로 일반조합원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간부 등과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대법원2005다30610판결 등), 유권해석 등으로 인해 노조의 직책을 맡지 않은 일반 조합원들마저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1) 예
- 2) 일반 조합원은 제외되어야 한다.
- 3) 일반 조합원, 간부를 포함 개인은 제외하고, 법인격인 노동조합만이 청구 대상이 되어야 한다.
- 4) 기타( )
- 5) 잘 모르겠다.

8. 근로자가 입사할 때 신원보증인을 요구하는 회사가 있는데, 친구나 이웃 등 신원보증인에게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보십니까?

- 1) 제3자인 신원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과도하다.
- 2) 신원보증인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3) 기타( )
- 4) 잘 모르겠다.

9. 영국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규모에 따라 기업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제한해서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입법례처럼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상한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1) 필요하다.
- 2) 필요하지 않다.
- 3) 기타 ( )
- 4) 잘 모르겠다.

10. 기업의 경영진들은 정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소 취하, 가압류 해제를 해주겠다고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곤 합니다. 노조 탈퇴 수단으로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를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노조 탈퇴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는 소권 남용이므로 제한되어야 한다.
- 2)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는 재판청구권의 일환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 3) 기타 ( )
- 4) 잘 모르겠다.

11. 국제노동기구와 유엔경제적문화적사회적권리위원회에서 한국사회의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파업권', '노동권' 침해 사안으로 지적하고 시정, 재조사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2022년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현 정부에서 어떤 입장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으로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정부차원에서 권리침해여부를 전면 재조사하고, 시정조치 후 결과를 답변해야 한다.
- 2)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 3) 기타 ( )
- 4) 잘 모르겠다.

12. 현 정부에서 각 기관에 배치한 적폐청산TF의 활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와 관련해서는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철회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2019년 7월, 민갑룡 경찰청장이 쌍용차 정리하고 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국가폭력'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습

니다. 그럼에도 24억원의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국가폭력을 인정한 사건이므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는 적절하지 않으며, 철회해야 한다.
- 2) 국가폭력을 인정한 사건이므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는 적절하지 않으나,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 3) 기타 ( )
- 4) 잘 모르겠다.

13. 2018.9.12 발표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백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노조무력화시도' 등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일부 가담한 사실이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백서에서 지목한 사건과 관련해 '쟁의행위'를 한 노동자들은 '불법 쟁의행위'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은 물론, 1천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수백억원의 가압류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일부는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기업의 불법행위에 행정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방관 또는 위법행위를 묵인한 가운데 저항한 노동자들이 민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전면 재조사 후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및 피해복구 차원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있는 손해배상청구 가운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해서는 취하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 2) 행정기관의 위법적 조치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각기 다른 사안으로 보아야 한다.
- 3) 기타 ( )
- 4) 잘 모르겠다.

14. 본 사안과 관련해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재해주시시오.

고맙습니다.

**\* 첨부자료2. 20대 국회 손배가압류 관련 입법 경과**

1)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2017.1.18. 발의, 2017.9.14.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음.

▶ [200515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24인)



• 심사진행단계



•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005157	2017-01-18	강병원의원 등 24인 <a href="#">제안자 목록</a>	의안원문	제20대 (2016~2020) 제348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현행「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조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민사면책의 인정 요건을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로 좁게 한정하고 있어, 폭력이나 파괴행위와 같이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아닌 평화적인 노무제공 거부에 대해서까지

[+ 더보기](#)

•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환경노동위원회	2017-01-19	2017-09-14			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2017-09-14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요약

▶ 관련위 심사정보

관련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의견서제시일	문서
법제사법위원회	2017-0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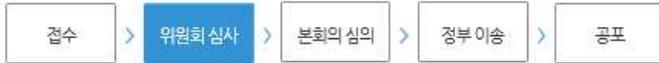
2) 괴롭히기소송금지법(국가 등의 괴롭힘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 2018.10.04 발의, 2019.3.14. 제367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이후 논의되지 않음

▶ [2015857]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박주민의원 등 22인)



· 심사진행단계



·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015857	2018-10-04	박주민의원 등 22인 <a href="#">제안자 목록</a>	의안입문	제20대 (2016-2020) 제36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이른바 전략적 통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약칭 SLAPP)은 통상 시민의 공적 참여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재정부, 단체 및 개인이 시민의 공적 참여를 위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함. 이는 재판청구권을 남용하여 시민의 청원권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목적과 효과를 가져오는 소송으로서 미국 등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그 제한을 위한 입법, 사법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 더보기](#)

·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경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법제사법위원회	2018-10-05	2019-03-14			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019-03-14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요약